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121호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1. 자치법규명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창원시는 3개 항만(마산항, 진해항, 진해신항)을 보유한 항만·물류도시로서 항만·물류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항만·물류 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다른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항만·물류산업 육성 등을 위한 종합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항만·물류산업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항만·물류산업 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항만·물류 정책 자문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3조)

사.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한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3

발의연월일 : 2023. 10. 13.

발 의 의 원 : 한상석・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남수
김묘정・김상현・김영록・김우진・박승엽
박해정・백승규・이해련・정길상・
진형익 의원(15명)

찬 성 의 원 : 김헌일 의원(1명)

1. 제안이유

창원시는 3개 항만(마산항, 진해항, 진해신항)을 보유한 항만·물류도시로서 항만·물류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항만·물류 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다른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항만·물류산업 육성 등을 위한 종합계획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라. 항만·물류산업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항만·물류산업 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항만·물류 정책 자문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3조)

사.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항만·물류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항만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 “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물류”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항만·물류산업”이란 항만개발사업,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물류 및 물류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의 항만 발전 및 물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시행하고 항만·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항만·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항만·물류산업 육성 등을 위한 종합계획) ① 시장은 항만 발전 및 물

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창원시 항만·물류산업 발전 및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도시계획, 항만기본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등 장기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물류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전략과 추진 방향
2. 항만·물류산업의 환경 및 여건변화
3. 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4. 항만·물류산업에 대한 자금, 투자, 입지, 인력 등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항만·물류산업 관련 산·학·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항만물류단지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항만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역관리무역항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항만·물류 관련 정책과 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항만·물류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이나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항만·물류산업 육성 등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항만·물류 정책 개발 및 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만·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자문 및 정책 토론
2. 항만·물류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홍보
3. 항만·물류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기술 교류 및 산·학·연·관 협력 사업
4. 항만·물류산업 관련 시설 구축 및 운영
5. 항만·물류산업 관련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 등의 유치 활동
6. 「항만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역관리무역항의 활성화 지원
7. 항만·물류산업의 체계적인 분류와 정책 및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조사
8. 그 밖에 시장이 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항만·물류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창원시 항만·물류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항만·물류산업 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정부나 경상남도의 항만·물류 분야 정책에 대한 협의·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만 관련 정책 및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항만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항만·물류·해양레저·마리나, 도시계획, 건축·경관 분야(이하 “관련 분야”라 한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3. 관련 분야의 기관 및 단체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교수 및 전문가
5. 관련 분야의 기관 및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항만·물류 정책 개발 및 항만·물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15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항만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항만·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기업 및 공무원 등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7. “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시설(항만구역 밖에 설치하려는 제5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장래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의 신설·개축·보강·유지·보수(補修) 및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항만물류”란 항만에서 화물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 및 포장 등 일련의 처리과정을 말한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항만운송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선용품공급업·선박연료공급업·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며,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선용품공급업은 건조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